

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 
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200
------	-----

2014. 12. 4.  
기획경제위원회

## I 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4년 11월 14일, 박양숙의원의외 17명

나. 회부일자 : 2014년 11월 19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】

-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(2014. 12. 4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토론, 의결(원안가결)

## II . 제안설명의 요지(박양숙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환경개선 종합계획 공표의무와 차별적 노동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조치를 마련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

를 보호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고용환경개선 종합계획 공표의무를 부과함(안 제4조).
- 차별적 노동행위에 대한 신속구제를 위해 노동차별개선 담당관을 지정·운영할 수 있음(안 제7조제3항 신설).

## 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윤병국)

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본 개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환경개선 종합계획 공표의무와 노동차별개선 담당관제도 도입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나.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추진

- 서울시(이하 “시”)는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고용불안 심화와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선도적 대응 필요성에 따라 2012년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‘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대책’을 마련해 추진하였음.

- 이에 따라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향후 2년 이상 행정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해 시와 투자·출연기관에 소속되어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1,36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음.
- 또, 전환대상자에게는 또한 호봉제 도입, 복지포인트, 연가보상비, 퇴직금, 시간외수당, 건강진단금 등을 지급해 근로조건과 관련해 차별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음.

〈표 1〉 정규직 전환 실적

구 분	계	1차 ('12.5.1)	2차 ('13.1.1)
계	1,369명	1,133명	236명
본 청 · 사 업 소	484	325	159
투 자 출 연 기 관	885	808	77

- 시는 이외에도 2013년 이후 청소, 시설·경비, 기타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5,996명을 순차적으로 직접고용하기로 계획하였으며, 2014년 10월까지 5,305명에 대한 직접고용을 완료하는 등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음.

〈표 2〉 간접고용 근로자 직접고용 실적

구분	대상(계)	간접고용→직접고용(완료)				간접고용→직접고용(추진중)				
		소계	청소	시설	경비	소계	청소	시설	경비	기타
계	5,996	5,305	4,254	619	432	691	91	72	56	472
본청·사업소	1,254	1,088	594	329	165	166	-	4	20	142
투자출연기관	4,742	4,217	3,660	290	267	525	91	68	36	330

다. 고용환경개선 종합계획의 공표의무와 노동차별개선 담당관 운영

- 안 제4조제2항은 시장이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수립·시행하는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)의 시행결과와 성과에 대한 공표의무를 정하고 있음.
- 시와 투자·출연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비롯한 각종 고용환경 개선대책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종합계획의 공표의무는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의 참여가능성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안 제7조제3항은 각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차별적 노동행위에 대한 감독과 신속한 구제를 위한 ‘노동차별개선 담당관’ 제도의 지정·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.

- 「근로기준법」 등에서 규정하는 각종 근로조건과 관련한 구제절차 등과는 별도로 ‘노동차별개선 담당관’제도의 도입은 시와 투자·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각종 차별적 노동행위에 대한 사전적 개선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.
- 다만, 실제 운영과정에서 ‘노동차별개선 담당관’ 제도가 실질적으로 노동차별 해소에 관련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없음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8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 
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보고하여야 한다”를 “보고하고, 공포하여야 한다”로  
한다.

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③ 공공부문의 장은 고용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차별적 노동행위에  
대한 감독과 신속한 구제를 위해 노동차별개선 담당관을 지정·운영할  
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